

발사국의 국제법상 지위

이 준*

Status of a launching state in international law

Lee, Joon*

ABSTRACT

On August 25th, Korea launched KSLV-1(Naro), the first Korean launch vehicle with the payload of a small satellite. The launch itself was successful in that the first and second stage of the launch vehicle functioned properly but unfortunately the satellite was unable to be put into earth orbit due to the failure of a nose faring detachment. As the history of human space activities shows, it is recognized as a difficult task to be a launching state requiring efforts to obtain enough technical ability. But along with the technical ability, there has to be an understanding on international legal systems on space launch vehicle. It is because the launch may cause cross-border losses and because the launcher is regarded as a strategic technology resulting in international control.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international status of launching state and to consider legal regimes necessary for launcher development.

초 록

올해 8월 25일, 한국은 최초의 소형위성탑재 발사체인 KSLV-1(나로호)를 발사했다. 발사체의 1단과 2단이 각각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발사 자체는 성공적이었으나, 위성은 노즈 페어링 분리 실패로 인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물론, 인류의 우주개발 역사에서 보듯이, 발사국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과업에 틀림없다.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적 난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원 및 기술자들이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발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력만 확보해서 되지는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법규범에 대한 이해가 같이 되어야 한다. 특히 발사시 만약의 경우 국경을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한 발사체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국제법규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사체를 개발, 운용하는 발사국의 국제법적 지위를 검토하고, 발사체 개발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국제법체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Key Words : space law(우주법), launching state(발사국)

1. 서론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에 발사하여 성공하였다. 스푸트니크 1호는 시속 약 3만km의 속도로, 지구궤도를 96분마다 한 바퀴씩 돌면서 다음 해 1월 4일까지 3개월동안 운용되었다. 지구를 둘 때 어떤 나라도 스푸트니크 1호가 자국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우주는 영공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법규범화 하기 위해 UN에서는 국제우주법 제정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 나온 국제우주법이, 1967년 UN에서 제정되고 국가들에게 가입을 위해 개방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즉, 외기권조약¹⁾이다.

외기권조약 제1조는 모든 국가가 우주활동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제2조는 우주를 국가주권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주기본조약인 외기권조약에 따라 모든 국가는 우주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지위를 향유하는 대신, 국가들은 우주개발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도 동시에 갖도록 되어 있다.

우주물체를 탑재하여 발사하는 경우에는 그 우주물체의 사양을 UN에 등록해야 하고, 발사로 인해 타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하며, 발사체가 주로 전락기술에 해당하고,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및 물품의 이전 및 확산을 통제하는 국제체제의 영향도 받는다.

우리나라도 이제 나로호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발사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른 만큼, 본 논문에서는 발사국이 고려해야 할 국제법상의 사항 및 국제체제를 소개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2. 우주물체의 UN 등록

외기권조약 제정 이후, 우주활동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규범화하기 위해 1968년 구조반환협정²⁾, 1972년 책임협약³⁾, 1974년 등록협정⁴⁾, 1979년 달협정⁵⁾이 UN의 주도하에 제정되었다.

등록협정에 따르면, 우주물체가 외기권에 발사되는 경우 발사국은 먼저 자국의 적절한 등록부(appropriate registry)에 그 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 같은 국내 등록절차를 끝낸 후 등록국(state of registry)은 UN 사무총장에게 가능하다면 속히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발사국(들)의 이름 ;
- (b) 우주물체의 적절한 명칭 또는 등록번호 ;
- (c) 발사일시 및 발사지역 또는 위치 ;
- (d) (노들주기, 궤도 경사각, 원지점, 근지점을 포함한) 기본 궤도요소(basic orbital parameters);
- (e) 우주물체의 일반적 기능⁶⁾.

UN 사무총장은 제공된 정보를 UN 사무국의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는데, 등록부는 UN 사무국의 우주과(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에서 보관하고 있다. UN 사무국 등록부에 기재된 정보는 website를 통해 공개 된다⁷⁾.

등록하는 우주물체에 대해서 동 협정 제2조 (b)항은 ‘우주물체(space object)’에는 우주물체의 구성품, 동 우주물체운반 발사체 및 발사체 구성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물체로 등록하는 품

2) 구조반환협정, 정식명칭은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1968년 제정, 1969년 한국 발효, 2008년 1월 현재 90개국 비준, 24개국 서명.

3) 책임협약, 정식명칭은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1972년 제정, 1980년 한국 발효, 2008년 1월 현재 86개국 비준, 24개국 서명.

4) 등록협정, 정식명칭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1974년 제정, 1976년 발효, 1981년 한국 발효, 2008년 1월 현재 51개국 비준, 4개국 서명.

5) 달협정, 정식명칭은 “달 및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1979년 제정, 1984년 발효, 한국 미발효, 2008년 1월 현재 13개국 비준, 4개국 서명.

6) 등록협정 제4조.

7) www.unoosa.org 중 register of space objects 부분 클릭 후 국가별, 연도별 등록신청 및 정보 확인 가능

1) 외기권조약, 정식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1967년 제정, 발효, 1967년 한국 발효, 2008년 1월 현재 98개국 비준, 27개국 서명.

목은 위성, 발사체 및 구성품이 다 해당될 수 있다.

실제 국가들의 관행을 보면 위성 또는 위성 및 발사체를 국제등록하고 있으며, 그 구성품까지 모두 등록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록협정은 ‘발사국(launching state)’을 정의하고 있는데, 동 협정 제1조에 따르면 발사국이라 함은,

- (i) 우주 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를 의뢰한 국가(즉, 우주물체 발사국 또는 발사의뢰국),
- (ii) 자신의 영토 또는 시설로부터 우주 물체가 발사된 국가(즉, 發射地國)를 의미한다.

이렇듯 등록협정은 발사국의 정의를 복수로 규정하여, 발사국이 여러 국가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동 협정 제2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에도 UN에의 국제등록은 한 국가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기권조약 제8조에 의거하여,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를 ‘자국의’ 등록부에 등록한 국가는 그 물체에 대해 관할권 및 통제권을 보유한다. 등록협정 제1조에 따라 복수의 발사국이 각각 자국의 등록부에 등록하게 되면, 모두 국내법상 관할권 및 통제권을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보면, 등록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은 한 개의 국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법’상 각 국가들이 관할권 및 통제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는 이를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복수의 발사국이 서로 국제등록을 하려는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한별위성도 그 예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등록협정 제2조는 우주물체의 UN 등록과 관련하여, 발사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 협정을 통한 상호 합의의 하여 어느 국가가 등록할 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공위성 또는 우주

발사체를 단독 개발하기 때문에 발사를 타 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UN 등록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나, 인공위성 또는 우주발사체를 공동개발하는 경우에는 등록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한별위성의 경우도 인공위성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고 공동 소유하였기 때문에 상호합의를 통해서만 UN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상호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간에 관할권 행사 내용상에 협정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미정인 상태로 남아 있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일단 UN에 가등록을 한 상태이다.

가등록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으며, 한일 양국이 협정을 통해 상호합의를 하여야 국제법적으로 등록국의 지위가 인정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별위성을 제외하고, 그 동안 총 10기의 위성을 등록하였다.

나로호의 발사에 대해서도 금년 8월25일의 시험발사는 실패하였으나, 실패에 대한 조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서 본 발사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발사체에 대한 우주물체 등록을 할 것으로 본다.

우주물체 등록 시 우리나라는 주무부처가 외교통상부 장관을 경유하여 UN OOSA에 등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방송통신과 관련된 인공위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부처로서 UN 등록을 하고⁹⁾, 그 외의 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발사체 포함)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로서 UN 등록을 한다¹⁰⁾.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UN등록

9) 전파법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0) 우주개발진흥법 제9조(우주물체의 국제등록)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물체의 수명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8) 등록협정 제2조 제2항. “Where there are two or more launching States in respect of any such space object, they shall jointly determine which one of them shall register the objec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bearing in mind the provisions of article VIII of the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nd without prejudice to appropriate agreements concluded or to be concluded among the launching States on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the space object and over any personnel thereof.”

과 별도로 국제기구인 ITU(국제통신연합)에 사전에 국제등록을 해야 한다¹¹⁾.

3. 우주손해배상

외기권조약 제7조에는 우주물체 또는 그 구성품으로 인하여 타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우주물체의 발사국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 동 협약에 따르면, 우주개발자가 국가이건 민간인이건 우주손해에 대한 책임 자체는 우주물체의 발사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¹³⁾.

그 후 우주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효과적인 국제적 규칙과 절차를 설정할 필요성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하고 공평하며 신속한 보상을 보장할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책임협약이 제정되었다.

11) 전파법 제39조(위성체도등의 국제등록)

①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체도등을 확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12) 외기권조약 제7조. "Each State Party to the Treaty that launches or procures the launching of an object into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nd each State Party from whose territory or facility an object is launched, is internationally liable for damage to another State Party to the Treaty or to its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by such object or its component parts on the Earth, in air space or in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3) 외기권조약 제6조.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shall bear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whether such activities are carried on by governmental agencies or by non-governmental entities, and for assuring that national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present Treaty.

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entities in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shall require authorization and continuing supervision by the appropriate State Party to the Treaty.

When activities are carried on in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b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with this Treaty shall be borne both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participating in such organization."

책임협약 제1조 (c)항은 등록협정 제1조와 동일한 '발사국(launching state)'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발사국은,

(i) 우주 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를 의뢰한 국가(즉, 우주물체 발사국 또는 발사의뢰국),

(ii) 자신의 영토 또는 시설로부터 우주 물체가 발사된 국가(즉, 發射地國)를 의미한다.

책임협약은 '우주손해'에 대해서도 규정함으로써 책임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있는데, 동 협약 제1조 (a)항은 인명의 손실, 인체의 상해 또는 기타 건강의 손상 또는 국가나 개인의 재산, 자연인이나 법인의 재산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를 '우주손해'로 명시하고 있다¹⁴⁾.

책임의 한도는 손해발생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주물체가 지구 표면에 또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발사국이 절대 책임(absolute liability)을 지며¹⁵⁾, 지구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피해국의 과오(fault)가 손해의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사국이 책임을 진다¹⁶⁾. 과오, 즉 'fault'에 대해서는 책임협약상에 정의규정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주의의무(duty of care) 또는 행동규범(standard of conduct) 위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절대책임이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서, 무과실이어도 책임진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이라고도 불리 운다. 주로 우주, 환경, 원자력 등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적용되어 본인이 사고예방을 위해 엄격하고도 치밀한 사전노력을 하도록 유도해 내는 효과를 가진다.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서, 우주

14) 책임협약 제1조 (a)항.

15) 책임협약 제2조. "A launching State shall be absolutely liable to pay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in flight".

16) 책임협약 제3조. "In the event of damage being caused elsewhere than on the surface of the Earth to a space object of one launching State or to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such a space object by a space object of another launching State, the latter shall be liable only if the damage is due to its fault or the fault of persons for whom it is responsible".

물체가 지구 표면에서 또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국이 절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지구표면 이외의 영역, 예컨대, 우주 또는 기타 천체에서 손해를 끼친 경우 역시 발사국이 책임을 부담하되, 피해국이 손해의 원인제공자인 경우에는 발사국은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경우 손해발생의 원인이 피해국에게 있다는 입증책임은 발사국에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주개발자가 국가이건 민간인이건 우주손해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 자체는 우주물체의 발사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발사국은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자연스럽게 자국민의 우주활동을 감독하게 된다. 외기권조약 제6조는 이를 명문화하여 발사국이 자국민의 우주활동에 대해 허가(authorization)와 계속적인 감독(continuing supervision)을 하도록 하고 있다.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에는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jointly and severally) 책임을 진다. 즉,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국은 자신의 재량으로 공동발사국들 중에서 어느 한 국가에게 완전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¹⁷⁾.

공동발사국 중 손해배상을 지불한 발사국은 공동발사의 타 참가국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동 발사국들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할 재정적인 의무의 할당에 관해 합의할 수 있다¹⁸⁾.

17) 김대순, 국제법론, 2003, 삼영사. p.734.

18) 책임협약 제5조.

- “1. Whenever two or more States jointly launch a space object, they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any damage caused.
2. A launching State which has paid compensation for damage shall have the right to present a claim for indemnification to other participants in the joint launching. The participants in a joint launching may conclude agreements regarding the apportioning among themselves of the financial obligation in respect of which they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Such agreement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a State sustaining damage to seek the entire compensation due under this Convention from any or all of the launching States which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3. A State from whose territory or facility a space object is launched shall be regarded as a participant in a joint launching.”

또한 발사국이 ‘국제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국가가 동 손해를 야기한 개인에게 ‘국내법’상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면제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자국민이 우주손해를 야기한 경우, 대외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 후 해당 자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국내법을 보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된 우주손해배상법은 책임협약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우주손해를 야기한 개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¹⁹⁾.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제법의 특성상, ‘자국민’에 끼친 손해 또는 자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외국인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협약 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 책임협약은 제7조에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a) 발사국의 국민,
 - b) 발사 시 또는 그 이후의 일련의 단계에 우주물체의 운용에 관여하는 외국인 또는 발사국의 초청을 받아 발사장소 근접지역에 있는 외국인²⁰⁾.
- 자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이 적용되게 되고, 외국인 중에서도 우주물체의 발사 등 운용에 관여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협정 또는 계약을 통해 상호 면책(cross-waiver of liability)의 대상이 되며, 발사와 관련하여 초청을 받는 경우에는 대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참관하는 것이어서 책임협약보다는 발사국의 국내법 또는 해당 외국인과와의 별도의 약정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19) 우주손해배상법 제3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① 정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 20) 책임협약 제7조.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damage caused by a space object of a launching State to:
- (a) nationals of that launching State;
 - (b) foreign nationals during such time as they are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of that space object from the time of its launching or at any stage thereafter until its descent, or during such time as they are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a planned launching or recovery area as the result of an invitation by that launching State.”

이를 고려하여, 책임협약에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국내법 또는 해당 외국인과의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국제사법(國際私法)이 적용될 것이다.

책임협약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주체인 국제법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국가가 되며, 자연인 또는 법인이 책임협약을 원용하여 발사국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피해를 입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국적국이 피해국으로서 책임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책임협약상의 피해국의 손해배상 청구권한은 일반 국제법상의 외교적 보호권²¹⁾과는 성격이 다른데, 왜냐하면 그 전제요건이 되는 '사전구제 절차 완료의 원칙²²⁾'이 책임협약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²³⁾.

4. 비확산체제

4.1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유인항공기를 제외한 대량과괴무기의 운반체제 개발에 이용 가능한 기술 및 물자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핵과 생화학 무기를 비롯한 대량과괴무기 확산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체제로서 2009년 11월 현재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MTCR은 Category I과 Category II로 구분되어 있는데, Category I은 초민감품목으로서 이점이 강력하게 통제된다. 500kg의 탑재체를 300km이상의 거리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로켓완성시스템, 무인비행체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로켓완성시스템에는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우주발사체 및 과학로켓 등도 포함하며, 무인비행체 시스템에는 순항미사일, 무인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완성시스템이 아니라 하더라도, 로켓의 단(stages), 재진입 우주선, 로켓 엔진, 유도시스템 등도 역시 Category I에 해당된다.

Category I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및 기술은 Category II로 간주되는데 이에 300km의 사거리를 넘지 않는 완성로켓시스템 및 무인비행체 시스템과 더불어, 대량과괴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미사일 이외의 관련 장비, 소재 및 기술 등이 해당되며 MTCR의 부속서에 매우 상세하게 장비, 소재 및 그 부품 등이 명시되어 있다. Category II 품목 역시 통제 대상이기는 하나, 회원국들이 그 이전(transfer)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Category I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및 기술은 Category II로 간주되는데 이에 300km의 사거리를 넘지 않는 완성로켓시스템 및 무인비행체 시스템과 더불어, 대량과괴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미사일 이외의 관련 장비, 소재 및 기술 등이 해당되며 MTCR의 부속서에 매우 상세하게 장비, 소재 및 그 부품 등이 명시되어 있다. Category II 품목 역시 통제 대상이기는 하나, 회원국들이 그 이전(transfer)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MTCR은 '대량과괴무기 운송시스템으로 이용되지 않는 한', 국가우주프로그램 또는 관련 국제협력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미사일기술과 우주발사체기술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우주발사체 장비 및 기술의 이전(transfer)시 신중을 기하고 있다.

나로호를 개발하는 KSLV-1 사업을 러시아와 공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MTCR의 정신을 반영하여 우주기술보호협정²⁴⁾이 한국과 러시아간에 체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Category I과 Category II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호품목(protected item)'으로 지

21) 외교적 보호권 : 자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법하게 권리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동 자연인, 법인의 국적국인 자국이 가해국가인 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

22) 사전구제절차 완료의 원칙 : 피해자인 자연인 또는 법인이 가해국 내에서 이용가능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다 밟지 않으면 그의 국적 국가는 국제청구를 제기하는 등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원칙.

23) 책임협약 제13조

"1. Presentation of a claim to a launching State for compensation for damage under this Convention shall not require the prior exhaustion of any local remedies which may be available to a claimant State or to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it represents.

2.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vent a State, or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it might represent, from pursuing a claim in the courts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agencies of a launching State. A State shall not, however, be entitled to present a claim under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same damage for which a claim is being pursued in the courts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agencies of a launching State or under an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is binding on the States concerned."

24) 정식명칭은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간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영문으로는 'Agree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양국 비준에 의거 2009년 7월에 발효.

정되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이전(transfer)시 특별한 감독과 관리를 요하도록 하였다.

MTCR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회원국들은 로켓 및 기타 무인비행 운송시스템 혹은 관련 장비, 소재 및 기술에 대한 국내수출허가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자국의 우주개발현황 및 수출허가제도(export licensing measure)에 대해 자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4.2 HCOC

2002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미사일기술 비확산 관련 「국제 미사일 행동규약」 회의가 개최되어 93개국이 규약에 서명, 발효되었는데 이것이 HCOC (Hague Code of Conduct)이다. HCOC의 설립목적은 대량살상무기의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s)의 확산 방지이며, 미사일의 개발, 시험 및 배치에 대해 최대한의 통제를 행사하는 등 MTCR의 보충규범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MTCR과 같은 회원국 가입 제한은 없어서 2009년 5월 현재 한국을 비롯한 130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²⁵⁾.

HCOC은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기술상 유사함을 고려하여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프로그램에 대한 각국의 연례보고(annual declarations)²⁶⁾ 및

25) MTCR의 경우, 전체 회원국의 consensus 없이는 회원국의 가입이 되지 않는다. Consensus란 의장이 안전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회원국들이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는 형식의 국제회의결정 절차로서, 표결을 통해 전체가 찬성하는 ‘만장일치’와는 법적인 성격이 다르나,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안전이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HCOC은 단순히 가입을 희망하는 내용의 외교노트(diplomatic note)를 현재의 연락담당국(Immediate central contact)인 오스트리아 외교부에 송부하면 그것으로 가입이 성립된다.

26) HCOC 제4조 (a)항 (ii)호.

“The Subscribing States ...

- ii) With respect to expendable Space Launch Vehicle programmes, and consistent with commercial and economic confidentiality principles, to:
 - make an annual declaration providing an outline of their Space Launch Vehicle policies and land (test-) launch sites;
 - provide annual information on the number and generic class of Space Launch Vehicles launched during the preceding year, as declared in conformity with the pre-launch notification mechanism referred to hereunder, in tiret iii);
 - consider, on a voluntary basis (including on the degree of access permitted), inviting international observers to their land (test-) launch sites.”

발사 시 사전 통고(Pre-launch notification)제도²⁷⁾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HCOC 회원국으로서 매년 우주발사체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우주센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HCOC 연락담당국(Immediate central contact)인 오스트리아의 외교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8월에 나로호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의 일반사양, 예정된 발사원도우, 발사장소 및 예정된 발사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 통고(PLN, Pre-launch notification)를 발사예정일 7일 전에 한 바 있다.

4.3 북한 발사의 검토

올해 초 북한은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UN에 우주물체 등록협약 가입을 하고, 발사경로 및 낙하물의 낙하지점에 대한 정보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하는 등 발사국으로서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며, 발사를 강행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는 등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다.

사실 우주활동은 국가의 주권사항이며, 외교권조약에서도 제1조에서 외교권은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탐색하고 이용하며 천체의 모든 영역에 대한 출입을 자유롭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⁸⁾.

27) HCOC 제4조 (a)항 (iii)호.

“The Subscribing States ...

iii) With respect to their Ballistic Missile and Space Launch Vehicle programmes to:

- exchange pre-launch notifications on their Ballistic Missile and Space Launch Vehicle launches and test flights. These notifications should include such information as the generic class of the Ballistic Missile or Space Launch Vehicle, the planned launch notification window, the launch area and the planned direction.”

28) 외교권조약 제1조.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shall be carried out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irrespective of their degree of economic or scientific development, and shall be the province of all mankind.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우주활동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주활동이 단순한 평화적 목적의 활동 뿐 아니라 비확산체제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은 핵비확산조약인 NPT에 가입하였던 중에도 꾸준히 핵개발을 하여 결국 2006년도에 핵무기 실험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투명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정권으로 인식된 바 있다. 핵무기는 특히 국제사회에서 대량과피무기로 분류되어 국가주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이 개발에 있어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는 분야이다.

우주발사체는 MTCR의 목적에서도 나와 있듯이, 핵과 같은 대량과피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확산체제의 강력한 통제의 대상이 되며, 그 개발도 단순한 국가주권사항이라기 보다 국제사회의 통제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2006년 핵무기실험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결의 1718호를 채택하고, 핵무기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도 모두 중지할 것을 결의하였다²⁹⁾. 따라서 금년 초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다.

UN 안보리 결의는 제재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동 결의를 위반하는 경우 안보리는 경제적 제재, 외교적 제재 나아가서 군사적 제재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

5. NOTAM

bodies, shall be free for exploration and use by all States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on a basis of equality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there shall be free access to all areas of celestial bodies.

There shall be freedom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n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nd States shall facilitate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uch investigation.”

29) UN 안보리 결의 1718호.

제2조, “Demands that the DPRK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 or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제5조, “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하는 곳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잡하고 혼잡한 공역에서 여타 비행물체의 비행과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항로 및 발사체적, 방향 등을 조정해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기의 정기항로 및 임시항로를 전 세계에 공지함으로써 혹시 있을 수 있는 항로의 중복 또는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항공운항정보를 공지하는 체제가 항공고시(NOTAM, Notice to Airmen)이다. 우주발사체 발사도 해당되는 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국가는 항공고시보에 이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타 항공기가 해당 시간 내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항공법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및 항공정보업무규정, 공역사용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국토해양부 산하 항공교통센터는 비행정보를 기재하는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하고 있으며, 만약 발사자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면 항공교통센터에 공역사용신청을 하고 항공고시보(NOTAM)에 기재함으로써 타 항공기가 해당 시간 내에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관할 비행정보구역(FIR, 즉, Flight Information Region)은 인천 FIR이며, 필요시 인접 비행정보구역에도 비행정보를 제공한다. 나로호 발사와 관련한 인접 비행정보구역은 일본의 후쿠오카 FIR³⁰⁾, 필리핀의 마닐라 FIR, 미국의 오클랜드 FIR이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발사예정일 1개월 전에 관련 FIR 담당국 사전통보를 위해 항공교통센터에 통보한 바 있다.

6. NOMAR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경우 분리되는 단 및 페어링 등 낙하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낙하물에 대한 예상위치정보를 사전에 통보해야, 선박들이 해당 시간 내 해당지역의 통과에 유의할 수 있다.

해양교통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러한

30) 2006년 2월 15일, 기존의 동경 FIR과 나하 FIR을 후쿠오카 FIR로 통합함.

낙하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서 공지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항행통보(NOMAR, Notice to Mariners)이다.

우리나라에서 항행통보를 운용하는 법적 근거는 수로업무법 제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으로서,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경우 발사자는 국립해양조사원에 낙하물에 대한 예상 위치정보를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항행통보(NOMAR)'에 기재함으로써 선박들의 해당시간 내 해당지역의 통과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전세계 항행구역(NAVAREA) 16개 중 NAVAREA XI에 속하는데, 그 조정국이 일본이며 구역 내 회원국(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미국(괌), 베트남)과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북태평양 서부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및 말라카-싱가포르를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통과를 제한하고 있다. 나로호 낙하물의 낙하지점은 북태평양 서부에 해당되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조정국인 일본 및 IMO에 발사예정일 4주 전에 사전통보 한 바 있다.

7. 결론

우주활동 자유의 원칙은 국제법상 확고하게 확립된 법규범이다. 하지만, 이는 모든 국가들이 우주개발을

하면서 어떠한 제한도 없이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타국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필요시에는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기도 하는 등 국제우주법상 확립된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우주발사를 하는 발사국이 고려해야 하는 국제우주법상 질서를 전반적으로 다룸으로써, 이제 기술적으로 본격적인 우주개발레도에 오르게 된 우리나라가, 우주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각 종 법규범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참고문헌

1. 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2003
2. Francis Lyall & Paul Larsen, Space Law, 2009
3.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 Oxford, 1997
4. Setsuko Aoki, The Concept of the 'Launching State' revisited, 항공우주법학회지, pp.123-145, 2002
5. United Nations Treaties and Principles on Outer Space, United Nations, 2008
6. UN OOSA website : www.unoosa.org
7. MTCR website : www.mtcr.info
8. HCOC website (오스트리아 외교부) : www.bmeia.gv.at/en/foreign-ministry/foreign-policy/disarmament/weapons-of-mass-destruction/hcoc.html
9. 외교부 website : www.mofat.go.kr